

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

1. 심사경위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97. 10. 화순군수
- 나. 회 부 일 자 : 97. 10. 7.
- 다. 상 정 일 자 : 97. 10. 22 (제57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)

2. 제안 설명요지

- 가. 제 안 자 : 내무과장 최 영 옥
- 나. 개정사유
 - 정보화 시대에 부응할 전담 전산업무 기구 설치에 전산 전담기구 담당 사무를 규정하기 위함.
- 다. 주요내용
 - 제7조 내무부 분장 사무중 제10호 전산 및 통신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제13호 내지 제20호를 신설
 - 13. 행정통신 및 FAX 보안에 관한 사항
 - 14. 통신시설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
 - 15. 행정전산망 및 일반 데이터 회선관리에 관한 사항
 - 16. 행정방송시설 및 행정통신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
 - 17. 전산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
 - 18. 일반 전산업무에 관한 사항
 - 19. 주 전산기 관리 및 유지에 관한 사항
 - 20. 전산기술 보급을 위한 교육 훈련에 관한 사항

3. 검토보고

- 동 조례 개정안은 전남도 자치 12200-1734 (97. 9. 19)호로 승인된 전산계 설치에 따른 담당 사무를 규정하기 위한 개정조례로서 화순군 조례규칙 심의회 심의를 거치는 등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됨.

4. 질의답변 요지

"생략"

5. 토론요지

"생략"

6. 심사결과

"원안가결"

첨 부 : 화순군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

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97 - 115
----------	----------

제출일자 : 1997. 10. 7

제출자 : 화순군수

1. 제안이유

- 정보화시대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고, 행정의 생산성 향상과 대민 서비스 제고를 위해서는 전산업무를 전달할 기구의 설치가 절실히 필요하다는데 인식의 바탕을 두고
-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도에 전담기구(전산계) 설치를 승인 요구한 바 있는데
- 자치 12200-1734 (97. 9. 19)호로 전담기구 설치와 주전산기 관리 운영을 위한 정원이 승인 되었기 현 정보통신계에서 담당 하였던 전산관련 사무를 분리하면서 전산 전담기구에서 담당할 사무의 대강을 새롭게 정하기 위함.

2. 주요골자

- 제7조 내무과 분장 사무중 제10호 전산 및 통신에 관한사항 삭제하고, 제13호 내지 제2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
- 13. 행정통신 및 FAX 보안에 관한 사항
- 14. 통신시설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
- 15. 행정전산망 및 일반 데이터 회선 관리에 관한 사항
- 16. 행정방송시설 및 행정통신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
- 17. 전산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
- 18. 일반 전산업무에 관한 사항
- 19. 주전산기 관리 및 유지에 관한 사항
- 20. 전산기술 보급을 위한 교육 훈련에 관한 사항

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

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 (내무과) 중 제10호를 삭제하고, 제13호를 제21호로 하며, 제13호 내지 제2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3. 행정통신 및 FAX 보안에 관한 사항
14. 통신시설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
15. 행정전산망 및 일반 데이터 회선 관리에 관한 사항
16. 행정방송시설 및 행정통신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
17. 전산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
18. 일반 전산업무에 관한 사항
19. 주전산기 관리 및 유지에 관한 사항
20. 전산기술 보급을 위한 교육 훈련에 관한 사항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제7조(내무과) 내무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.</p> <p>1. ~ 9. (생략)</p> <p>10. 전산 및 통신에 관한 사항</p> <hr/> <p>11, 12 (생략)</p> <p>(신설)</p> <hr/> <p>(신설)</p> <hr/> <p>(신설)</p> <hr/> <p>(신설)</p> <hr/> <p>(신설)</p> <hr/> <p>(신설)</p> <hr/> <p>(신설)</p> <hr/> <p>(신설)</p> <hr/> <p>(신설)</p> <hr/> <p>13. 그밖의 다른 실과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</p> <hr/>	<p>제7조(내무과) 내무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.</p> <p>1. ~ 9. (현행과 같음)</p> <p>10. (삭제)</p> <p>11, 12 (현행과 같음)</p> <p>13. 행정통신 및 FAX 보안에 관한 사항</p> <hr/> <p>14. 통신시설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</p> <hr/> <p>15. 행정전산망 및 일반데이터 회선 관리에 관한 사항</p> <hr/> <p>16. 행정방송시설 및 행정통신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</p> <hr/> <p>17. 전산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</p> <hr/> <p>18. 일반 전산업무에 관한 사항</p> <hr/> <p>19. 주전산기 관리및유지에 관한 사항</p> <hr/> <p>20. 전산기술 보급을 위한 교육 훈련에 관한 사항</p> <hr/> <p>21. (현행 제13호와 같음)</p> <hr/>